◈ 남북장관급회담 관련

(1)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3.1.24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6.15 공동선언을 계속 준수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핵문제에 대하여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였으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교류·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1월 24일

서 울

⑵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3.4.29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 상호 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재확인하고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준수하며 계속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개최되는 6.15 민족통일대축전이 화해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정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오는 8월 대구에서 열리는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남측은 이에 대한 편의를 적극 보장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이미 합의하여 이행중에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행사와 개성공단건설 착공식 문제, 금강산관광 사업 문제, 동포애·인도주의적 문제 등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쌍방은 경제협력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 면회소 착공식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하며 제7차 이산가족 상봉을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3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4월 29일

평 양

⑶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3.7.12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는데 상호관심사를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추석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8차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건설 착공식을 갖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진행중인 경제협력사업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2003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를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을 협의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방송 중지 등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8.15 광복절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12일

서 울

⑷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2003.10.17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이 200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남과 북은 당면하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하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2003년 11월 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004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7일

평 양

◈ 남북군사분야회담 관련

(1)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2003.1.27

쌍방은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임시도로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개방한다.

2. 쌍방은 임시도로를 통하여 비무장지대의 일부인 남북 관리구역 상대측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경우 인원 명단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군사분계선 통과시간을 사전에 다른 일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들은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하여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

3. 쌍방은 승인된 인원, 차량, 자재 및 장비에 한하여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남북관리구역 자기 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본 잠정합의서는 어느 일방이 합의서의 기본정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방의 통보에 따라 또는 동·서해지구 기본도로가 개통되어 새로운 합의서가 채택·발효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2003년 1월 27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수석대표	북측단장
대령 문성묵	대좌 유영철

⑵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경비(차단)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2.23

쌍방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 1조 6항에 따라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자기측 지역에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초소의 임무

① 남북관리구역내 철도, 도로의 안전상태를 관측하고 그를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보장한다.

② 남북관리구역안에서 차량고장,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를 감시한다.

③ 승인을 받은 차량과 탑승인원들만 통과시킨다.

2. 초소의 설치

① 쌍방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안의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자기측 도로 옆에 각각 1개씩의 경비(차단)초소를 설치한다.

② 초소의 규모와 형식은 2003년 11월 28일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단장)접촉에서 합의한 설계에 따른다.

③ 쌍방은 경비(차단)초소를 서로의 공사방법과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각측이 빠른 시일안으로 설치하고, 상대측에 통보한 다음 운영을 개시한다.

④ 초소에는 깃발 및 선전간판, 군사적 목적의 지하구조물과 화기진지 또는 총안구(화점) 등을 설비하지 않는다.

⑤ 초소앞 도로상에 필요한 경우 차량을 세울 수 있는 2~4개의 이동식 교통통제대(차단대)를 설치할 수 있다.

3. 초소의 운영

① 근무인원은 쌍방이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근무는 주간(4월부터 9월까지는 07시부터 18시, 10월부터 3월까지는 08시부터 17시)의 필요한 시간에 실시하며, 쌍방이 협의 하여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근무인원들의 무장은 각기 편리한 개인무기로 하고 1인당 실탄 30발 이하를 휴대하며, 그 외 다른 무기, 전투장비(기술기재)의 반입을 금지한다.

④ 쌍방 초소 근무 인원들은 불필요한 군사적 자극을 피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100m 거리를 유지한다. 100m내로 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4.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

① 본 합의서 이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동,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쌍방 현장군사실무책임자들 사이에 협의 해결한다.

② 필요한 경우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사이에 협의 해결할 수 있다.

5. 효력발생과 수정·보충

① 본 합의서는 남북군사실무회담 쌍방 수석대표(단장)간 서명 하여 문건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합의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③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12월 23일

남북군사실무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북측 단 장
대 령 문 성 묵	대 좌 유 영 철

◈ 남북경제협력 관련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2.14

남과 북은 2003년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사업, 임진강수해방지사업 등 이미 합의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세워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4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3년 2월 14일

서 울

⑵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문

2003.5.23

남과 북은 2003년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을 위한 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2003년 6월 10일경에 진행하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이 사업자간에 합의되는데 따라 6월 하순에 개최되도록 하며,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임진강수해방지를 위한 공동조사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6월중에 진행하고, 장마 전에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북측은 금년 장마에 대비하여 남측에 임남댐의 방류와 관련한 필요한 통보를 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와 남북해운합의서 및 개성공단건설을 위한 통신·통관·검역합의서 등을 각기 필요

한 절차를 거쳐 가급적 빨리 발효시키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금강산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강산 육로 및 해로 관광을 6월중에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6. 남과 북은 동포애와 상부상조의 원칙에서 인도주의적 협조를 진행해 나가며 남측은 북측에 쌀 40만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8월 하순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아래 실무협의회들과 실무접촉들은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개성 또는 문산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5월 23일

⑶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합의문

2003.8.28

남과 북은 2003년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1차적으로 경의선에서 문산-개성간, 동해선에서 저진-온정리간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자재·장비를 조속히 북측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1단계 개발구역에 대한 종합설계가 끝나는 데 따라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고 관련 하위규정들도 조속히 제정·공포하며 공단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해로관광과 육로관광, 관광지구 개발 등 사업자간 합의가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4개 합의서의 후속조치 등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

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제3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을 10월 초순경에 동시에 개최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진행하여 수해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남북간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접거래방식으로 더욱 확대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의 협의통로 개설 등 실무적 조치를 조속히 취해 나가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측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측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8.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합의에 따라 식량 제공과 분배현장 방문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제공된 쌀 10만톤에 대한 분배현장 방문을 9월 중에 진행하되 장소는 동·서해 지역에서 모두 3곳으로 하며 방문인원 수는 5~7명씩으로 한다.

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0월 하순경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8월 28일

⑷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합의문

2003.11.8

남과 북은 2003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데서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에서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철도·도로 연결구간의 궤도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위해 자재·장비 제공 등 실무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경의선에서는 2003년 12월 8일, 동해선에서 12월 2일 상호 상대측 공사현장방문을 진행하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첨부된 부록내용과 같이 한다.

제8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은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개최한다.

2. 남과 북은 개성공단 개발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방향으로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 규정의 제정·공포, 1단계 100만평 개발구역에 대한 설계 등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단관리기구도 구성·운영한다.

이와 함께 2004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2004년부터 시범적으로 청산결제 거래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실무적인 협의를 2003년 11월 하순 평양에서 갖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및 부속합의서 체결과 문서교환 협의 중에 있는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 토의를 빠른 시일내에 타결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개성공단에 직거래 확대 등 경제협력사업의 실무적 문제 협의를 위한 협의사무소를 내년 상반기 안에 개설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쌍방사이의 거래물품에 대한 시범적인 원산지확인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문제 등을 올해 안에 협의·타결하기 위한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2003년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평양 또는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7.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는 2004년 3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다.

2003년 11월 8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⑸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2003.7.31

남과 북은 2003년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근본정신에 맞게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장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0년 12월 16일 서명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에 관한 4개 합의서의 발효통지문을 2003년 8월 6일,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교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하였다.

4. 남과 북은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개성·금강산 지구 통행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의 장소와 일자는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⑹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2003.7.3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이 민족내부거래로서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증명서발급기관의 인장,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관련사항들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3. 쌍방의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료 또는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에는 송하인, 수하인, 생산자, 생산장소, 운송수단, 품명, 포장의 수 및 종류, 수량, 중량, 발급장소, 발급일자, 발급번호, 발급기관 및 발급기관의 인장 등을 기재한다.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한글 또는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 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 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6. 쌍방은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대측 원산지 확인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현지방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에 따른 편의제공과 신변안전을 보장한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2. 쌍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기관의 주소, 최고책임자 등을 이 합의서를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호 통보하며, 통보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원산지증명서 면제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500 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1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 물품

다. 우편물

라. 재반출될 예정으로 일시 반입되는 물품

2. 제1항에 규정된 물품 이외에 남북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물품의 종류, 성질, 그 상표, 제조자명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남 또는 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쌍방 합의로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8조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1. 쌍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가.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나.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다. 남북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라. 기타 남북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 교환

2. 실무협의회는 각기 3~5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3. 실무협의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개최한다.

4. 제1항 나호의 「원산지확인에관한세부기준」은 본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로서 본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9조 해석 및 적용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제10조 수정·보충 및 발효

1.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2.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7월 31일 각각 2부 작성하였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03년 7월 31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7)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10.12

남과 북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문산(파주)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경제협력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2.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는 3명으로 구성하되 대표는 국·과장급으로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미 진행된 정상적인 거래대상에 대하여 11월 중순에 원산지 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시기와 장소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토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통행에 관한 문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여 나가기로 하였으며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이행을 위한 청산결제 신용한도, 품목선정, 이자율 등을 차기 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원만히 진행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교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장소와 날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0월 12일

문 산(파주)

⑻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10.12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위원회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상사분쟁해결기구이다.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독자적인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가진다.
2. 위원회의 쌍방은 각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의 체결,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소송제기의 능력을 가진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각기 정한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2. 남과 북은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자, 기타 필요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각기 위원장, 위원을 지명한다.
3.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한다.
4. 쌍방은 자기측 위원장, 위원에 결원이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를 선정하고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 즉시 통보한다. 선정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속하여 재임할 수 있다.

6. 위원장과 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7. 쌍방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보좌인원을 둘 수 있다.
8.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회의 서기 1명을 각기 지정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합의서 제3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한 사업을 책임지고 주관한다.
2.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인·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 중재인 권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중재판정부의 권한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방 당사자가 제기하는 중재판정의 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을 비롯한 사건수속 및 처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은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이 지정한 감정인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남과 북에서 선정된 중재인들을 확정하고 등록한다.
4. 위원회는 남북경제협력과 교류의 발전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제4조 위원회 결정의 효력

남과 북의 재판기관은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심사할 수 없다.

제5조 위원회 회의운영절차

1. 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일방 또는 쌍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는 경우

나. 중재판정부 또는 조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쌍방 위원장은 자기측 위원들에게 회의 예정날짜 15일전에 회의날짜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기간은 쌍방위원장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위원회 회의는 쌍방에서 각기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성립된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개로 할 수 있다. 구체적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일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회 회의 내용은 쌍방의 합의로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가 제3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나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7. 위원회의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쌍방 위원장이 토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식 서명하고 교환하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본다.
8. 위원회 회의에는 쌍방 위원장의 합의에 따라 중재인이나 조정인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가시킬 수 있다.
9. 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 위원회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장소는 회의소집 시기마다 쌍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7조 중재인명부 교환

1. 위원회의 쌍방은 자기측 중재인명부를 작성하고 각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상대방 위원회에 통지한다. 중재인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호 통지한다.
2. 위원회의 일방은 상대방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상대방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1. 중재판정취소신청은 중재규정에 정한데 따라 중재판정취소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3. 위원회가 중재판정취소신청을 심의하였으나 심의개시후 3개월 이내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심의기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의로 3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보장

1. 남과 북은 위원회와 중재인 및 조정인의 사업과 활동조건 보장에 대하여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해당한 분쟁사건 해결을 위하여 위원장, 위원 및 양측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하고 상대방 위원장에게 통지한 사건해결관계자에 대하여 신변의 안전과 출입 및 통신을 포함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조건을 보장한다.
3. 위원회와 그 재산은 분쟁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당국인 경우 그에 대한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범위 내에서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4. 제2항에서 열거된 자는 그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남과 북의 재판기관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에서 쌍방의 합

의로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사건 당사자, 대리인, 증인 및 감정인이 분쟁해결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0조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능

1.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 기관을 각기 지정한다.
2. 지정된 중재사무처리기관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위원회로부터 접수한 쌍방의 중재인명부와 중재인의 자격설명서를 보존하고 비치한다.

나. 중재판정문 원본, 중재 또는 조정을 위하여 제출된 각종 서류 원본을 보존하고 비치하며, 인증한 서류의 원본 또는 부본을 발급하거나 교부한다.

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으로 자기측 위원장이 지정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위원회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문서보관소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11조 위원회의 재정

1.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남과 북에 각각 둔다.
2. 위원회의 비용중 공동비용은 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기 부담한다.
3. 기금은 남과 북의 위원회 운영, 중재사업과 관련한 필요한 사업에 쓴다.
4. 위원장, 위원 및 그 보좌인원은 위원회로부터 보수를 따로 받지 않는다.

제12조 통지

쌍방 위원장 사이의 통지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한다. 쌍방 위원장이 따로 합의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판문점 연락관을 통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대방 연락관에게 인도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협의 및 수정 · 보충

1. 이 합의서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정하는 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2. 남과 북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이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수정 · 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4조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및 폐기

1.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각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폐기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폐기통지는 통지한 날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 내에 접수한 중재신청에 대하여는 이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이 합의서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합의서의 발효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한다.

이 합의서는 2003년 10월 12일 각각 2부 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관 김광림	건설건재공업성 부상 최영건

⑼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12.20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보장에 관한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하여 토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남북간의 통신 연결 문제를 협의하여 서울-개성-평양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결 방법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고 차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문제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10)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12.20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하였다.
   통보내용에는 발급번호, 날짜, 송하인, 수하인, 상품명, 수량, 운송수단 등을 포함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간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할 자료목록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장소와 날짜는 추후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11)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2003.12.20

남과 북은 2003년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해 나가는 방향에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 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남과 북은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한다.

3.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2003년 12월 20일

평 양

(12)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합의서

2003.1.25

남과 북은 2003년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하여 나가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군사분계선에서 자기측 방향으로 진행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연결하기로 한다.
   각 구간별 연결시점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협의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궤도부설 자재·장비 등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연결 공사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1차분 자재·장비와 궤도부설용 자재·장비 등은 해상과 육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3.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상호 교환하고 많은 부분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빠른 시일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열차 및 차량운행사무소 개설 문제,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계에 필요한 현장조사 문제 등 기타 제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과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앞으로 진행되는 실무접촉을 통해 협의·확정한다.

2003년 1월 2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윤 진 식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창련

(13)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 합의서

2003.3.1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4차 실무접촉을 2003년 3월10일에서 1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 연결공사를 3월말에 군사분계선에서부터 동시에 착수하여 자기측 방향으로 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한다.

가. 쌍방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공사착수 5일전까지 협의·확정한다.

나. 남측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하여 제공한다.

2. 남과 북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제공된 자재·장비의 정상 이용을 위한 사용결과 통보 및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

가. 1차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은 경의선에서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동해선에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각각 진행한다.

나. 현장방문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은 단장(대표1명), 기술인원 4-5명을 포함하여 8~9명 정도로 구성한다.

다.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이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통보 내용 확인과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남측은 현장방문에서 확인된 사항에 따라 장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도록 한다.

라. 남측 기술인원들의 왕래 경로는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이용하되, 남측 인원들에 대한 명단제출, 신변안전, 편의제공 등은 종전관례에 따른다.

마. 북측은 남측 기술인원들의 현장방문 5일전에 1월까지 제공된 자재·장비의 사용결과 및 현장방문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며, 매월 자재·장비 사용결과를 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명의로 남측에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궤도연결공사 착수를 위한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1차분 자재·장비 품목과 수량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각각 첨부 1, 첨부 2와 같이 한다.

4.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자재·장비들을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를 통해 인도·인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5.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전체제공분과 열차운행합의서를 문서 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2003년 3월 1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14)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2003.6.9

남과 북은 2003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철도 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사인원을 제외한 행사참가인원은 행사 2일전에 상호 통보하며 행사인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남북철도연결행사의 형식, 규모, 방법 등은 본합의서의 부록 1에 따라 진행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을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 첨부 1로 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이 제공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전체분 자재·장비의 품목과 수량은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확정한다.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공사를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해 1차분 자재를 부록 3과 같이 합의 조정한다.

3. 남측은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장비 설치와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6월 중순부터 7월말 사이에

진행하며 북측은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한다. 기술지원은 본 합의서의 부록 2에 따라 진행한다.

4.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공사용 자재·장비에 대한 인도·인수와 기술지원 인원들의 왕래는 경의선·동해선의 임시도로를 이용한다. 왕래하는 인원들의 출입은 이미 정한 출입절차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7월중 합의되는 시기에 진행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진행한다.

2003년 6월 9일

(15)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 합의서

2003.7.4

남과 북은 2003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문산에서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제3차 회의를 진행하고 경의선과 동해선의 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중단없이 자기측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제공하는 전체분 자재·장비(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들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합의하였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들은 앞으로 협의 확정되는 데 따라 첨부 1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경의선은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해선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현장조사 절차와 방법은 본 합의서의 부록에 따라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남측의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와 차량운행을 위한 사무소의 설치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열차 및 자동차 운행에 앞서 발효·이행해 나간다.

5.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은 2003년 8월 초 개성에서 개최한다.

2003년 7월 4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16)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2003.8.2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을 2003년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성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가 10월부터 공사일정에 맞추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등은 앞으로 쌍방간 협의되는데 따라 그 품목 및 수량을 첨부 1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공사를 위해 제공된 장비의 설치와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① 콘크리트혼합장 기술지원은 경의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동해선에서 9월 16일부터 필요한 기간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들은 경의선 5~6명, 동해선 7~8명으로 한다.

② 남측이 제공한 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기술지원은 우선 동해선에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의선에서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진행하며 남측 기술인원은 각각 7명 정도로 한다.

③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에 필요한 부속품 제공 및 기술지원을 계속 실시하기로 한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지원 날짜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④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3. 남과 북은 남북철도·도로연결 제6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에 준하여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진행하며,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기술협력을 한다.

남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10월말까지 끝내고 설계자료를 북측에 제공한다.

4.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본도로가 개통될 때까지 쌍방이 합의하는 인원, 자재·장비 등의 이동통로로 본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열차, 차량운행사무소 설치문제를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빨리 확정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은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2003년 8월 22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박 창 련

(17) 남북철도·도로연결 제7차 실무접촉 합의서

2003.10.28

남과 북은 제7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자재·장비 제공합의서 첨부 1의 전체분 자재·장비 인도·인수를 10월말부터 시작하여 쌍방간 합의된 공사일정에 맞춰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암반제거 등에 필요한 자재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1차 사용현장방문을 경의선에서 11월 8일, 동해선에서 11월 5일 실시하기로 한다.

사용현장방문 및 암반제거용 자재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1에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3.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6차 기술 지원을 경의선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해선은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되는 기술 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남북철도·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4. 남과 북은 남측이 전달한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자료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실무접촉 등을 통해 협의, 확정되는 데에 따라 자재·장비 제공 및 기술지원을 진행하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보다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쌍방 공사구간 현장방문과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며 일정과 장소, 방법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003년 10월 28일

(18) 남북철도·도로연결 제8차 실무접촉 합의서

2003.12.5

남과 북은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을 200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속초에서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를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 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 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실무접촉 포함)는 문서교환방식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한다.

2003년 12월 5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북남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 측 위 원 장	북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정경제부 차 관 김 광 림	건설건재공업성 부 상 최 영 건

◈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1)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2003.1.22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절차 협의를 위해 2003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금강산에서 제3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금강산면회소 설치 및 운영

① 금강산지역 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한다) 설치장소는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 구역으로 한다.

② 면회소는 면회장, 객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센터 형식의 건물로 1천명 정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건설하되 연건평 규모는 쌍방 건설 실무자들이 공동으로 설계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확정한다.

③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는 남측이, 부지·인력은 북측이 제공한다.

④ 면회소 건설에 필요한 설계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⑤ 면회소 건설은 1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며, 착공식은 지질조사, 설계 등 선행공정이 진척되고 자재, 장비들이 들어오는 데 따라 4월중 남과 북이 공동으로 한다.

⑥ 쌍방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각기 10명 정도씩의 관계자들로 「금강산면회소 건설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의 첫 접촉을 2월 10일에 금강산에서 진행한다.

⑦ 면회소 운영과 관련한 문제는 면회소가 완공되기 1개월전까지 확정한다.

2. 제6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

① 남과 북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을 2003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6차 상봉의 규모, 절차 등 실무적 문제는 지난 시기의 전례를 따른다.

③ 남과 북은 면회소가 완공되기 이전에도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주소확인문제,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문제와 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관한 문제 등은 제6차 이산가족 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해 나간다.

4.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2003년 4월말 금강산에서 개최한다.

5. 효력 발생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월 22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이 병 웅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대표단
단장 리 금 철

⑵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2003.11.6

남과 북은 2003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이하 면회소라 함) 건설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면회소를 착공 후 1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적극 협력한다. 면회소 건설 부지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으로 한다. 면회소건물의 연건축 면적은 6,000평(20,000㎡)으로 하되, 앞으로 필요에 따라 증축할 수 있다.

2. 남측은 면회소 건설을 전담하며, 계획(형성)설계는 북측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 북측은 남측이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자재를 보장하며, 그 비용은 남측이 지불한다.

3. 북측은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출입하는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과 편의 등을 금강산관광 남측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례에 따라 보장하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한 자재·장비에 대한 반출입을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면회소 설계·시공·완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관련하여 각기 자기측 해당사항을 책임지고 단계별로 완료한다.

5. 면회소건설 착공식은 부지 지질조사와 실시(기본)설계 완료 후 1개월 내 진행한다. 착공식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문제는 앞으로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확정한다.

6. 남측은 면회소의 완공 후 관리·운영을 전담한다.

7. 남과 북은 면회소 내에 각기 300평(1,000㎡) 규모의 면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면회 운영문제 등을 협의하고, 시설 사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견은 남북 면회사무소간 상호 협의를 거쳐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한다.

북측 면회사무소의 건설은 쌍방이 협의하여 진행한다.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남북회담은 면회사무소에서 개최한다.

8. 면회소는 금강산관광사업 등 면회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다.

9. 남과 북은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할 경우 판문점 적십자연락사무소를 활용하며, 현지에 별도의 연락체계를 마련한다.

10.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충할 수 있다.

11.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3년 11월 6일

남북적십자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북측대표단
수석대표 이병웅	단장 최성익

◈ 대구U대회북측참가관련실무접촉합의서

2003.7.6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북측 참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북측 대학생체육협회간 실무접촉이 2003년 7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쌍방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에 따르는 제반 실무문제들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측은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선수, 임원, 심판진을 포함하여 200명 정도의 선수단과 310명 정도의 응원단을 파견하며 기자단은 19명으로 한다.

2. 북측은 7월 21일까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종목별 최종 선수단 명단과 등록서류를 제출한다.

3. 북측 선수단은 8월 17일, 응원단은 8월 18일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여 직항노선으로 남측에 오며 남측지역 이동시에는 남측이 제공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경기종료 후 귀환시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4. 남측 선수단과 북측 선수단은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으로 입장한다. 선수단 표지판 및 복장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전례에 따른다.

5. 남측은 북측의 선수단, 응원단에 대해 숙소배정, 수송, 훈련과 경기, 응원활동, 신변안전 등 체류기간 동안의 편의를 보장하며, 북측은 경기

대회 참가기간 남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6. 남북 선수단은 경기에 각각 출전하며 시상식 때에는 각기 자기의 국기를 게양하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찬가를 연주한다. 또한 대회기간 중 열리는 각종 회의에 남과 북은 대표 또는 대표단을 각각 참가시킨다.

7. 남측은 북측 선수단에 대해 체류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부담하며, 북측 응원단 및 기자단에 대해서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8.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중 한반도기는 남북 공동입장 및 남북간의 경기시에 사용하며 남측은 북측의 국기 게양과 국호표기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규정과 국제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9.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에 각각 국제전화 1회선, 남북직통전화 5회선을 보장하며, 북측 기자단에 TV전송 1회선, 사진전송 1회선, 남북직통전화 2회선과 국제전화 4회선, FAX 2회선을 제공한다.

10. 남측은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남측 체류기간 중 제기될 수 있는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쌍방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우호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11. 대회기간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기자단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히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 쌍방은 현지에 연락관을 파견한다.

12.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추후 제기되는 구

체적인 실무절차 문제는 판문점을 통한 문서교환 방식으로 세부협의를 진행한다.

2003년 7월 6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 직 위 원 회	대 학 생 체 육 협 회
사 무 총 장 하 진 규	부 위 원 장 장 정 남